






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조치결과보고

[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(2공구)]

- 점검일시 : 2018.09.06 (목)
- 조치결과
- ◆ 점검자 : 박상종

지적내용	점검사진	조치일자	조치사진
		조치내용	
<p>○ 터널 안전</p> <p>- 터널내 타설된 슛크리트(shotcrete)는 일부 바닥 기반암과 밀착되지 않거나 버력이 잔존한 상태에서 타설된 부위가 있으니 보완하기 바람.</p> <p>- 대피통로 굴착후 슛크리트(shotcrete)를 타설 하였으나 일부 타설 두께가 부족한 부분(암상노출)이 있고, 암이 노출된 구간에 일부 이완된 암석이 있으니 낙반 등에 의한 근로자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거하기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(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), 제351조(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)</p>		<p>2018.09.11</p> <p>- 바닥기반암과 밀착되도록 잔존버력처리후 슛크리트 타설조치 완료</p> <p>- 대피통로 암노출 이완된 암석제거후 슛크리트 타설두께 (100mm)확보하여 조치 완료</p>	

<p>○ 흙막이가시설 안전</p> <p>- 개착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가시설 중앙말뚝은 좌굴 및 부등침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브레이싱 설치가 버팀보 설치와 동시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기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46조(조립도), 제347조(붕괴 등의 위험방지)</p>		<p>2018.09.11</p> <p>개착구간 좌굴 및 부등침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브레이싱 설치가 버팀보와 동시에 이루어 지도록 관리하겠음</p>	
<p>○ 흙막이가시설 안전</p> <p>- 개착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가시설 중앙말뚝은 플랜지가 변형되어 있으므로 보완하고, 장비작업 및 외부충격에 의해 변형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(붕괴 등의 위험방지)</p>		<p>2018.09.11</p> <p>개착구간 가시설 중앙말뚝 플랜지 변형부 보강조치 완료 및 향후 변형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음</p>	
<p>○ 흙막이가시설 안전</p> <p>- 개착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시트파일과 wale이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 전달되는 하중에 충분히 지지될 수 있도록 용접 등 보완하기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46조(조립도), 제347조(붕괴 등의 위험방지)</p>		<p>2018.09.11</p> <p>개착구간 시트파일과 wale부 보강용접조치 완료</p>	

<p>○ 전도재해 예방</p> <p>- 개착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wale 받침이 동행로로 길게 노출되어 있어 근로자 전도재해가 우려되니 적정 길이로 절단 또는 근로자가 인지하기 쉽게 관리 및 보호조치를 하기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</p>		<p>2018.09.11</p> <p>개착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wale 받침 절단 및 보호조치 완료</p>	
<p>○ 감전재해 예방</p> <p>- 터널내 조명시설에 있는 가설전선 콘센트는 접지극이 파손되어 있으니 보완하기 바람</p> <p>- 터널내 배수펌프 플러그가 꽂혀 있는 콘센트는 접지 상태가 불량하니 근로자 감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하기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(전기 기계기구의 접지)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18(기계기구 접지)</p>	 	<p>2018.09.11</p> <p>- 접지극이 파손된 가설전선 콘센트 교체 조치 완료</p> <p>- 접지상태 불량인 배수펌프 콘센트는 재접지 조치 완료</p>	 

<p>○ 감전재해 예방</p> <p>- 개착구간 상부 작업장 있는 CO2 용접기 단자 접속부는 보호가 되어 있으나 그 상태가 미비하니 근로자 감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하기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(전기 기계기구등의 충전부 방호)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21(용접작업 및 용접기)</p>		<p>2018.09.11</p> <p>CO2용접기 단자 접속부 보호조치 완료</p>	
<p>○ 기타 안전관리</p> <p>- 터널내 설치되어 있는 환기관은 터널내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보수하기 바람.</p>		<p>2018.09.11</p> <p>터널내 설치된 부분 손상된 환기관 보수조치 완료</p>	